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7호 2023. 8. 2(수)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732호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1
- 남원시 규칙 제733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560호 공시송달공고----- 24
- 남원시 공고 제2023-1562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남원시 공고 제2023-1565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37
- 남원시 공고 제2023-1566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48
- 남원시 공고 제2023-1580호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58
- 남원시 공고 제2023-1597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 남원시 공고 제2023-1601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69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28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법예고----- 8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8월 2일

남원시 규칙 제 732 호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흥부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흥부문화의 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u>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p>제1조(목적) ----- ----- ----- <u>흥부제전위원회</u> ----- ----- -----</p>
<p>제2조(기능) <u>위원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4. (생략)</p>	<p>제2조(기능) <u>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 재무 1인을 포함 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 및 흥부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한다.</u></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③ ----- ----- ----- <u>위원장</u> ----- -----.</p>
<p>제4조(임기)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p>	<p>제4조(임기) ----- ----- ----- ----- <u>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u> -----</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u>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단서 신설></u>	<u>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u> <u>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8월 2일

남원시 규칙 제 733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대상 품목)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품질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나. 사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사용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품위유지 위반 해당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대상자)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을 받은 자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신청 기간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제출되면 별표 2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에서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표 4의 상표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대상 품목(제2조 관련)

구분번호	상품류	품목
101	제29류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된 채소,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일(냉동한 과실은 제외),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냉동한 과일, 난(卵) 가공식품, 두부, 두부가공식품, 가공한 식육, 식용 유지, 유지가공식품,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식용 유지, 벌레가공식품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102	제30류	도정한 곡물, 발아한 곡물, 식용 곡분, 식용 전분,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사탕, 한과, 식초, 떡, 인절미,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 청국장, 차류, 차음료, 엿, 약과, 전과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103	제32류	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일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104	제33류	쌀로 빚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별표 2]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7조 관련)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영업 경력	10	○ 생산,영업 경력 5년이상	
	8	○ 생산,영업 경력 3~5년미만	
	6	○ 생산,영업 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	10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6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10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	○ 판매처 일부 확보	
	6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4. 생산,영업 장소 입지	10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	○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6	○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5. 생산품 유통상태	10	○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8	○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6	○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6. 생산시설 및 자재 등	10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 충분히 확보	
	8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6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7. 생산 기술 수준	10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우수	
	8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양호	
	6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보통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10	○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6	○ 사후관리 미흡	
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수거검사 자가품질위탁 검사 행정처분 관련(최근 3년)	10	○ 부적합 및 처분내역 없음	
	2	○ 부적합 및 처분내역 1건	
	0	○ 부적합 및 처분내역 2건 이상	
10. 가공식품 주원료	10	○ 남원시 관내 생산품일 경우	
	8	○ 주원료의 7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일 경우	
합 계			점

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공동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 방법(제8조 관련)

읍면동	번호	번호 부여 방법 및 부여 예시
운봉읍	1 - 0 - 0	<p>[번호 부여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1 - 101 - 1</p> <p>(읍·면동고유번호) (구분번호) (허가일련번호)</p> <p>[부여예시]</p> <p>1. 읍·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 시내에서 운봉읍의 주류를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1 - 104 - 1」로 부여한다.</p> <p>2. 허가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p>
주천면	2 - 0 - 0	
수지면	3 - 0 - 0	
송동면	4 - 0 - 0	
주생면	5 - 0 - 0	
금지면	6 - 0 - 0	
대강면	7 - 0 - 0	
대산면	8 - 0 - 0	
사매면	9 - 0 - 0	
덕과면	10- 0 - 0	
보절면	11- 0 - 0	
산동면	12- 0 - 0	
이백면	13- 0 - 0	
인월면	14- 0 - 0	
아영면	15- 0 - 0	
산내면	16- 0 - 0	
동충동	17- 0 - 0	
죽향동	18- 0 - 0	
노암동	19- 0 - 0	
금동	20- 0 - 0	
왕정동	21- 0 - 0	
향교동	22- 0 - 0	
도통동	23- 0 - 0	

[별표 4]

상표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6)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정해진 기일까지 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

행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승인취소
(9)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
(10)불량자재, 시설·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
(11)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
(12)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
(13)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
(14)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승인취소
(15)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승인취소	승인취소	"
(16)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	"
(17)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 사항이 통보된 경우	표시정지3월	"	"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신청서(제6조 관련)

(앞면)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생산자현황	사업장소재지		생산방법				
	시설규모(m ²)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시설현황(기계·설비)		자체상표사용				
	연간총생산량(톤) 연간총생산액(백만원)		영업등록일				
	사용원료		주원료		부원료		
주생산지역							
상표사용계획	품목명	인증구분	납품량(톤)	포장단위	포장재수	사용기간(3년)	주요납품처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가공식품 공동상표 서약서 1부.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5.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 1부.
6.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HACCP인증서 사본(의무적용 대상품목) 1부.

수수료

없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 신청자 자격확인 및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생산자현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원시 가공식품공동상표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제6조 관련)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품 목		출하계획량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 등은 위와 같이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지정 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top: 20px;">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준수 각서(제6조 관련)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업체명 :
- 주소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1. 위 본인은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신청인	단체(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허가현황	허가번호			
	품명			
	허가기간			
연장신청	기간		사용물량(톤)	
	사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제8조제2항 관련)

- 사 용 권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지 정 내 용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상
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제11조 관련)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	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전화 번호 :
관리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공고 제2023 - 15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7. 28. ~ 2023. 8. 15.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7.28..)	장○례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939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 461-1	주1 목조 주택 41.16㎡ 부1 목조 창고 28.13㎡ 부2 목조 창고 9.62㎡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8.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1562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안 제2조)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01. ~ 2023. 08. 21.**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6-5931), 직접방문, 전자메일

(ailow@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이주희 (063-620-7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강생활과장

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안 제2조)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 ~ 2023. 8.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회”를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인플루엔자: 연 1회
- 2. 대상포진: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로 한다.

- 1. 인플루엔자
 -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u></p> <p>2. <u>대상포진 : 1회</u></p> <p><신 설></p>	<p>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 ----- ----- -----.</p> <p>1. <u>인플루엔자: 연 1회</u></p> <p>2. ----- <u>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u></p> <p>3. <u>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u></p>
<p>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1. <u>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u></p>	<p>제3조(지원대상) ----- ----- ----- -----.</p> <p>1. <u>인플루엔자</u></p> <p>가. <u>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u></p> <p>나.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p> <p>다.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장애인</p> <p>라.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p>

현 행	개 정 안
<p>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u>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u>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른 국가유공자</u></p> <p>마.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따른 <u>다문화가족</u></p> <p>바.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u>한부모가족</u></p> <p>2. ----- ----- ----- -- <u>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u> ----- -----</p>

붙임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1565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변경하고, 접종 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접종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01. ~ 2023. 08. 2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6-5931), 직접방문, 전자메일
(ailow@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이주희
(063-620-7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강생활과장

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횟수를 변경하고, 접종 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규정 (안 제2조)
- 나. 접종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 ~ 2023.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신분증(제2조제1호 접종을 위한 영아일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u>」----- ----- -----.</p>
<p>제2조(정의) “<u>남원시 선택예방접종</u>”이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다. 1. <u>로타바이러스: 3회</u> 2. <u>대상포진: 1회</u></p>	<p>제2조(지원대상) <u>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위탁계약 선정) ① 남원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3조(위탁계약 선정) ① ----- ----- <u>조례</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u>신분증(제2조제1호)</u> 접종을 위한 영아일 경우에는</p>	<p>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 ----- ----- ----- ----- <u>신분증</u> ----- -----</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u>보호자 신분증</u>)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p>	<p>----- ----- ----- -----.</p>

붙임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1566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7. 28. ~ 2023. 8. 1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이메일(krj6580@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건지원과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 ~ 2023. 8.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 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 건법」 제34조제3항-----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 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 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붙임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1580호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목적, 정의, 위촉 및 교육·임기 규정 (안 제1조~제4조)
- 나. 대표단 구성 규정(안 제5조)
- 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7. 31. ~ 2023. 8. 20.(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52), 팩스(063-620-6706), 이메일(luvich@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목적, 정의, 위촉 및 교육·임기 규정 (안 제1조~제4조)
- 나. 대표단 구성 규정(안 제5조)
- 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 ~ 2023. 8.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남원시민의 안전의식과 시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

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 2023 - 1597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변경 규정 (안 제3조)
- 나.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 다. 분과위원회 분과 명칭 및 인원수 개정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2. ~ 2023. 8. 2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시민소통실 생활소통팀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이메일(seohs9547@korea.kr)
- ※ 기타 문의전화(시민소통실 063-620-6807)

5.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시민소통실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변경 규정 (안 제3조)
- 나.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 다. 분과위원회 분과 명칭 및 인원수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23. 8. . ~ 2023. 8. .(20일간)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 30명”을 “1명을 포함하여 60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해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눔복지로 행복한 남원
2. 함께 잘사는 남원
3.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
4. 활기찬 문화도시 남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명을 포함하여 60명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해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p>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p>	<p>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15명 -----</p>

현 행	개 정 안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행정복지 분과</u> 2. <u>경제농업 분과</u> 3. <u>안전건설 분과</u> 4. <u>문화·교육체육 분과</u> <p>③·④ (생략)</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나눔복지로 행복한 남원</u> 2. <u>함께 잘사는 남원</u> 3. <u>건강하고 안전한 남원</u> 4. <u>활기찬 문화도시 남원</u> <p>③·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3 - 1601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 나. 보훈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액 변동 규정(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 다.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안 제3조제4항)
 - (현행) 15~20만원 ⇒ (변경) 30만원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 ~ 2023. 8. 2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210), 팩스(063-620-6711), 이메일(mee0024@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지원 조례(안) : 붙임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 나. 보훈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액 변동 규정(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 다.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안 제3조제4항)
 - (현행) 15~20만원 ⇒ (변경) 3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 ~ 2023. 8. .

- 결 과: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및제3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및제3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호국보훈 수당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으로,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65세 이상인 사람</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u>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u>)</p> <p>2. (생략)</p> <p>3. ~ 5. 삭제</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 <u>사람</u>----- ----- -----.</p> <p>1. ----- ----- ----- ----- -- (<u>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u>)</p> <p>2. (현행과 같음)</p> <p>6.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p> <p>7.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p> <p>8.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p> <p>⑤ (생략)</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사실을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u>조례</u> 제7조 호국보훈수당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p> <p>④ -----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이 ----- 30만원-----, -----<단서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 ----- 국가보훈부----- ----- ----- ----- ----- ----- -----.</p>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사망위로금 지원액 인상
- 관련조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보훈수당	대상인원	-	1,400	1,370	1,340	1,310	1,280	월평균
	예산액	8,040,000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연간
사망위로금	대상인원	880	120	160	180	200	220	연간
	예산액	264,000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연간

※ 고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자연 감소분 반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인) 보훈수당 : 도비보조금 2만원, 자체세입 8만원
 - (1인) 사망위로금 : 자체세입 30만원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 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보훈수당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8,040,000	
사망위로금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26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 - 28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0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수도관리자, 손괴자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 다. 원인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규정 (안 제5조~안 제7조)
-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안 제8조)
- 마.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공사 시행자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 ~ 2023. 8. 2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오들1길 56[도통동 555], 남원시상수도사업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873), 팩스(063-620-6720), 이메일(dgr1976@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상수도사업소(☎063-620-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제정이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수도관리자, 손괴자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 다. 원인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규정 (안 제5조~안 제7조)
-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안 제8조)
- 마.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공사 시행자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 ~ 2023. 8.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란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10. “단위사업비”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등을 말한다)의 총자산(순자산) 대비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1.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시설용량”이란 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의 합을 말한다.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 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옥탕용 등을 말한다)의 경우 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4. “순자산”이란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 - 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 \times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15.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원인자(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타 시설물 또는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그 원인자에게 파손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피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피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

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한다)
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피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의 배상금
9. 그 밖에 홍보비 등

제6조(부담금 감면)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 및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시는 원인제공자와 별표 4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

3. 원인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추가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
4.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
5.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 제1항을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되,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음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
5.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6. 지원경비: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에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 시민에게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

③ 작업시간은 출장 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 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도물 공급 이전 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도물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 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는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긴급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 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6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4조, 제14조의2,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마. 「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단위사업비”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나.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 나.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
다. 계획 1인1일급수량 및 침투 계수는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4. “추가사업비”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5.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협약 당시까지 과년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별표 2]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경우

$$\{[(\text{순자산} \times \text{구경별 배부율}) / \text{구경별 전수}] \times \text{현실화율}\}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은 과년도 남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구경별 분담액 =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

가. 구경별 분담액은 기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구경별 배부율 = 해당 구경별 적수/구경별 적수 합계

다. 구경별 적수 = 보정계수(윌리엄 헤이즌 공식) × 기 설치된 수도전수

$$\text{※ 윌리엄헤이즌공식 : } Q=0.27583 \cdot C \cdot D^{2.63} \cdot I^{0.54} (\text{m}^3/\text{S})$$

라. 기 설치된 수도전수는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3. 원인자 부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 현실화율

가. 전담분담액 = 시설분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나. 현실화율 : 원인자부담금의 도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과 신규 급수 신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설분담금을 고려한 비율

다. 현실화율 산정 : 남원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100%로 한다. 그 비율 범위 내에서 남원시의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분담액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한다.

라. 산정된 현실화율도 시장이 서민경제와 지역물가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매년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따른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원)	비고
13mm	96,000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192,000	
25mm	320,000	
32mm	576,000	
40mm	880,000	
50mm	1,552,000	
75mm	3,104,000	
100mm	5,280,000	
150mm	11,616,000	
200mm	19,008,000	
250mm	75,680,000	
300mm	123,200,000	

[별표 4]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6조제2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_____에서 시행하는_____사업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 그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_____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_____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및 부대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① “을” 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② _____사업은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 이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 은 “을” 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 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 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m³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부대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 이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갑” 은 “을” 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을” 과 협의한다.

② “을” 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갑” 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구 분	납부금액	납부액비율	청 구 시 기	납 부 기 한
합 계		100%		
1차(최초)		50~80%	착공신고일 이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2차(정산)		50~20%	준공예정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	--------	----------	---------------

-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 ※ 전체 사업의 완공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③ 체납액과 지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 제출 및 통지) ① “갑”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각호의 사항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
2. 사업 착공 및 사업 준공(변경) 예정일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남 원 시 장

(을)

[별표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³/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³/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²) = 10,000a(cm²)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²)

(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

A = 면적(m²)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붙임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1. 3.>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